

나.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·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·결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,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 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86호

도시관리계획(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304호(1997.9.29.)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319호(2000.11.10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35호(2008.12.4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90호(2016.12.1.)로 변경 결정된 『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』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

2020년 3월 5일
서울특별시장

I. 결정(변경)취지

- 「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」 내 위치한 구로구 신도림동 413-9번지 일대 획지에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위해 연접한 획지(D2-1획지와 D2-2획지)를 합병하고 보차혼용통로 변경(폐지) 등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
II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: 변경없음

구 분	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	구로구 구로동 602-5일대 (경인로 558-6일대) 구로구 신도림동 642일대 (신도림로 16일대)	1,060,676.7	-	1,060,676.7	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304호 (1997.9.29)	-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: 변경없음
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: 변경없음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최소최대개발규모(미적용): 변경없음

나. 가구 및 획지계획: 변경

(1) 가구 결정조서: 변경없음

(2)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

가구 번호	획지 번호		획 지			비 고
			지 번	면 적(㎡)		
				기정	변경	
D2	기정	1	413-37대, 439-74대, 439-8대, 413-43대, 413-36잡, 413-35대, 413-9장, 439-76대, 439-47전	2,701.0	-	-
		2	413-10대	906.3	-	-
D2	변경	1	413-37대, 439-74대, 439-8대, 413-43대, 413-36잡, 413-35대, 413-9장, 439-76대, 439-47전, 413-10대	-	3,607.3	획지 합병

※ 변경된 획지만 표기

(3) 공동개발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조서: 변경없음

(4) 획지간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: 변경없음

2. 건축물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. 건축물의 용도: 변경없음

나. 건축물의 밀도: 변경없음

다.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: 변경

(1) 건축선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

구분	적용지역	계획내용		비고
		기정	변경	
건축한계선	경인로변 간선도로변(폭 20m 이상)	3m	3m	경인로변, 십자로변 등
	이면도로변	1~2m	1~2m	-
	소규모 필지 밀집지역	2~3m	2~3m	보차혼용통로로 활용
	대형필지	6~8m	6~8m	가로공원, 수림대로 활용
	개발완료 된 도로변(아파트 단지 등)	1~3m	1~3m	-

※ 소규모 필지 밀집지역으로 D2-2획지와 D2-3획지 사이 보차혼용통로에 지정된 건축한계선(양측 2m) 폐지

(2)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조서: 변경없음

3.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. 대지내 공지 및 통로: 변경

(1) 쌈지형공지(위치지정): 변경없음

(2) 수림대(위치지정): 변경없음

(3) 공공보행통로(2개소): 변경

가구번호		계획내용		비고
기정	변경	기정	변경	
D2	D2	4m	4m	D2-3, D2-4
		-	2m	D2-1, D2-3 (신설)

(4) 보차혼용통로(6개소): 변경

가구번호		계획내용		비고
기정	변경	기정	변경	
B5	B5	4~6m	4~6m	-
B7	B7	6m	6m	-
C3	C3	10m	10m	-
D2	D2	4m	-	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
D4	D4	10m	10m	-
D6	D6	6m	6m	-
E2	E2	4m	4m	-

나.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: 변경없음

다.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: 변경없음

4.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: 변경없음

5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: 변경없음

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

1.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: 변경없음

III. 관계도면: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IV. 열람장소: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02-2133-8381), 구로구 도시계획과(☎02-860-3249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